

## ●산림청고시 제2023-98호

「산지관리법」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보전산지를 지정해제하고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.

2023년 10월 12일

산림청장

### 보전산지 지정해제 고시

1. 관계도면 : 생략 (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같으며,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같음)

가. 보전산지 지정해제

행정구역의 명칭		도면의 명칭	도엽의 번호	구역의 표시
대전광역시	유성구	대전045	NJ52-13-20-045	준보전산지
대전광역시	유성구	대전054	NJ52-13-20-054	준보전산지
울산광역시	울주군	연양097	NI52-2-13-097	준보전산지
전라북도	순창군	순창022	NI52-1-19-022	준보전산지
전라북도	순창군	순창023	NI52-1-19-023	준보전산지
전라북도	부안군	부안041	NI52-1-10-041	준보전산지
전라북도	부안군	부안054	NI52-1-10-054	준보전산지
전라북도	부안군	위도060	NI52-1-9-060	준보전산지
경상남도	고성군	함안079	NI52-2-24-079	준보전산지

※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및 「산지관리법」 제6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산지정보시스템 (<http://www.forestland.go.kr>) 및 토지이음 (<http://www.eum.go.kr>)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.

2. 열람장소

보전산지 지정해제 관계 도·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산지관리부서에 비치하고 있습니다.

부 칙

-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- ② 보전산지 지정해제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.